

수원지방법원 2023. 5. 16 선고 2022가단1672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피고 C, D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수

변론 종결2023. 4. 4.

판결 선고2023. 5. 16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. 3. 20. 접수 제3943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9. 3. 20.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원고가 2009. 3.경 망 E(이하 '망인'이라고 한다)으로부터 20,000,000원을 차용하면서(이하 '이 사건 차용'이라고 한다)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주문 기재 근저당권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고 한다)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, 망인이 그 후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B, 자녀 피고 C, D가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피고 B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, 원고와 피고 C, D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.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차용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보건대,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(피고 C, D는 '특별히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원고가 그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할 때 변제하기로 하였다'며,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는 '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할 때'라고 주장하나, 근저당권설정자이자 채무자인 사람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서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므로, 그러한 대화내용이나 다짐 발언을 두고 변제기를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), 이 사건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 성립시, 즉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이 될 것인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. 3. 20.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,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 C, D는,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2020. 12. 24. 매도하면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, 원고가 위 매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소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,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문기선

별지